

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2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7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2. 21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2. 21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추경예산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최종예산	당초예산	간주처리	1회추경	2회추경	3회추경안 (명시 이월)
계		771,332	622,602	82,276	12,007	54,447	53,069
일반회계		753,865	608,146	80,016	12,007	53,696	50,869
특별회계		17,467	14,456	2,260	0	751	2,200
	의료급여기금	820	636	17	-	167	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642	291	-	-	351	
	주차장	16,005	13,529	2,243	-	233	2,200

- 2022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최종 규모는 7,713억 3,161만 1천으로, 당초예산 6,226억 183만 1천원, 제1회 추경 120억 660만원, 제2회 추경 544억 4,717만 6천원, 간주처리 822억 7,600만 4천원임.
-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8건 530억 6,873만 6천원임.

4. 명시이월

- 부서별 총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건수	이월액	연번	부서명	건수	이월액
계		48	53,068,736	10	건축과	2	69,532
1	자치행정과	1	1,900,000	11	문화체육과	7	4,862,813
2	교육지원과	2	8,685,003	12	청소행정과	4	620,800
3	지역경제과	3	10,693,000	13	주차관리과	2	2,200,000
4	일자리청년과	2	466,905	14	건설행정과	1	3,939,257
5	어르신 장애인과	1	457,000	15	도로과	2	1,926,973
6	가족정책과	4	5,129,046	16	치수과	1	2,520,000
7	아동청소년과	1	20,000	17	보건정책과	2	1,154,927
8	주거정비과	3	461,929	18	의약과	1	86,000
9	공원녹지과	9	7,875,551				

- ※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

(단위 : 개 / 천원)

구분	2019	2020	2021	2022
사업수	46	64	50	48
이월액	39,127,144	50,850,972	35,386,207	53,068,736

○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보조금	구비
합계 : 2개 부서 / 3건		3,743,109	1,240,927	113,167	1,127,760	0
보건정책과 (2건/1,154,927천원)	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	629,839	27,167	27,167		
	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	2,978,270	1,127,760		1,127,760	
의약과 (1건/86,000천원)	자동심장 충격기 관리	135,000	86,000	86,000		

○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

가. 보건정책과 명시이월 : 2건 1,154,927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계(1건)		3,608,109	1,154,927	27,167	1,127,760	0	
1	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	629,839	27,167	27,167			[연도 내 지출 불가] 재택치료 추진 기한 연장에 따른 이월
2	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	2,978,270	1,127,760		1,127,760		[연도 내 지출 불가] 코로나19 격리입원이 유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환자에 대한 집행 불가

나. 의약과 명시이월 : 1건 86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계(1건)		135,000	86,000	86,000	0	0	
1	자동심장 충격기 관리	135,000	86,000	86,000			[연도 내 지출 불가] 2022. 12 교부금 교부

5. 검토결과

명시이월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1)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2)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 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서

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 사업,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사업, 총 2개사업 1,154,927천원으로 사유는 연도 내 지출 불가임.

의약과는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사업, 1개사업 86,000천원으로, 사유는 연도 내 지출 불가임.

이상 3개 사업의 명시이월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.

6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7조, 제45조, 제50조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1) 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2) 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7조(회계연도 독립의 원칙)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

② 삭제 <2014. 5. 28.>

③ 삭제 <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

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
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
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
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
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
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
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
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
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
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